

## 발표2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중복게재의 제 문제

이민호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

- 교육부는 2015년 11월 03일자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교육부 훈령 제153호)하였다. 기존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60호, 2014.3.24.)」을 보다 구체시킴으로써, 동 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연구부정행위 판단 등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방향이고 목표였다. 교육부는 1년여의 개정 작업기간을 통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각 학문분야별 연구자 및 실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노력하였다.
- 금번에 개정·발표된 「연구윤리를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03.)」의 주요 개정의 핵심 내용 중에, 연구부정행위 범주에 “중복게재”가 “부당한 중복게재”의 용어로 새로이 포함되었다(동 지침 제12조제1항제5호).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그 동안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부정행위로 정의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인 전형적 표절 외에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출판하거나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인 중복게재를 연구자로서 삼가야할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부적절행위(research misbehavior)로 주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금번 교육부의 개정된 지침에서는 중복게재의 정의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유형 중에서도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한 후,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극히 제한한 ‘부당한 중복게재’ 만을 연구부정행위로 포함시킨 것은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이미 연구윤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미국 NIH의 연구자 3,2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연구자가 저지르는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비율은 1% 이하이며, 의심스런 연구수행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발생한다.

- 결국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로 정의된 전형적 표절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의심스런 연구수행, 연구부적절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노력 속에 중복게재 예방이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
- 금번 개정을 통하여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 유형 속에 포함하여 규정으로 금지시키고 있지만, 그 외의 중복게재 유형 또한 연구자로서 삼가야할 행위로 판단되어진다.

<표> 이차출판과 중복게재

용어	출처표시	부당이득 (double count 등)	비고
이차출판 (secondary publication)	O	X	허용
중복게재 (duplicate publication)	O	O	금지
	X	X	
중복게재 (duplicate publication) (부당한 중복게재)	X	O	

- 중복게재를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출판하거나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저작물 유형(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학술지 논문 등), 독자층의 동일성 정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비록 중복게재 여부를 사안별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여 할 부분이지만, 논문 작성과 평가에 대한 기본 이념과 규범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논문의 가치는 학문발전의 기여이고, 학문의 발전의 기여는 학문의 누적성을 가능케 하는 논문의 독창성과 논문 작성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있을 것이다.
- 중복게재는 독창성 없는 논문을 이중, 삼중으로 게재함으로써 독자나 출판사를 기망하고, 해당 연구자에게 부당한 연구업적을 쌓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으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반면, 이차출판은 독자층을 달리하는 경우, 허용되는 행위로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적인 창작활동이기 보다는 기존 논문의 보급확대, 활용성 확대로 보아야하며, 이에 따라 후속저작물에 선행저작물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후속저작물에 대한 별도 업적 산정은 이루어지지 말아야할 것이다.